

日本天皇署名捺印

昭和十九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小磯 國昭

軍需 大臣 藤原銀次郎

內務 大臣 大達 茂雄

厚生 大臣 廣瀬 久忠

勅令 第五一九號
女子挺身勤勞令 1992. 2. 08

第一條 勤勞常時要員으로서 女子(學徒勤勞令의 適用을 받는 자는 제외함) 대원조직(이하 女子挺身隊라 칭함)에 따른 근로협력에 관한 명령으로서 국가총동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 또한 당해명령에 따른 근로협력에 해야 할 자 또는 女子挺身隊에 의해 從業을 하는 자의 고용, 사용, 취직, 從業 또는 급여 기타의 從業조건에 관한 명령으로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본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第二條 국가총동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여자가 女子挺身隊로서 하는 근로협력(이하 정신근로라 칭함)은 국가 또한 지방공공단체 또는 후생대신과 지방장관(東京都에 있어서는 경시총감 이하 같음)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총동원업무로서 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第三條 挺身勤勞를 하는 자(이하 隊員이라 칭함)는 국민직업 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원이 될 수 있다.

第四條 계속 挺身勤勞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체로 一年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

第丁二條 挺身勤勞에 소요되는 경비는 명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 그 挺身勤勞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第十三條 厚生大臣(군수성소관기업에서의 근로관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군수대신) 또는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挺身勤勞를 받는 사업주에 대해 대원의 사용 또는 급여 기타의 從業條件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대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의 扶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第十四條 아래의 각항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대원으로 할 수 없다.

一. 육해군 군속

二.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에 소속하는 관청(부대 및 학교를 포함함) 또는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장소에서 군사상 필요한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第十五條 아래의 각항 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원이 될 수 없다.

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二. 가정생활의 根軸(根軸)이 되는 자.

三.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第十六條 후생대신 또는 지방장관은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신근로에 관해 市·町·村長과 기타 단체의 長 또는 학교장 그리고 정신근로를 받는 사업주를 감독함.

日帝「挺身隊법령」全文

여금 계속 一年 이상의 挺身勤勞를 시킬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第五條 挺身勤勞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

第六條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 또는 신청이 있을 경우 女子挺身隊의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市·町·村(市·町·村長에 준하는 자를 포함해서 東京都의 區가 존재하는 구역 또는 京都市·大阪市·名古屋市·橫濱市·神戸市에 있어서는 區長이라 칭함. 이하 같음) 기타 단체장 또는 학교장에 대해 대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명령하도록 함.

第七條 전조의 명령을 받은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적 상태, 가정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第八條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그 취지를 挺身勤勞令狀으로 통지하여 挺身勤勞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도록 함.

第九條 전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동조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종속하여 挺身勤勞해야 함.

第十條 挺身勤勞를 하는 경우 女子挺身隊의 조직 및 운영 또는 그 대원의 규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서 이를 정함.

第十一條 지방장관은 명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挺身勤勞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十七條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근로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공장·사업장·기타의 장소에 취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공장·사업장·기타 장소의 사업주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취직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를 고용해야 한다.

후생대신(軍需省소관 기업의 근로관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軍需大臣) 또는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一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전항의 사업주에 대해 제一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의 사용, 從業 또는 급여 기타의 從業, 조건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第十八條 제13조의 규정은 지방장관 또는 국민근로동원서장이 행하는 지도 또는 권장에 따라 여자가 여자정신대에 의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총동원업무에 있어서 공장·사업장·기타 장소에서 從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第十九條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령에 의한 그 사무의 일부를 국민근로동원서장으로 하여금 분장시킬 수 있다.

第二十條 제13조(제17조 제4항 및 제18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6조 그리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주인 국가 또는 都道府縣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第二十一條 본령중 후생대신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총독, 대만에 있어서는 대만총독으로 하고 지방장관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도지사, 대만에 있어서는 주지사 또는 청장으로 하고 市·町·村長이라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府尹(京城府에 있어서는 區長) 또는 邑面長 대만에 있어서는 市長 또는 郡守라 하고 국민근로동원서장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府尹, 郡守 또 島司, 대만에 있어서는 市長 또는 郡守라 하고 都道府縣이라 함은 조선에 있어서는 道, 대만에 있어서는 州 또는 廳으로 한다.

第二十二條 정신근로에는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第二十三條 본령에 규정하지 않은 이외의 정신근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함.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세계

학교 단체장에 선발권 부여

이 최영은 또 제1조에
서 「본령」을
한 조성에 있어서는 조
선총독, 대만의 대만총독으
로 하고 규정, 일본령